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자영업)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

-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후, 12개월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경우만 해당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12개월분)
 - 자유직업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다단계·방문판매원, 채권추심원, 개인택시, 개별용달, 퀵배송, 컴퓨터프로그래머, 샵매니저, 자동차딜러, 텔레마케터 등 프리랜서, 즉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포함)로 등록·위촉된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비영리사업(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도 적용)
- 사업개시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아 있어야 함.
사례) 「90일의 경우 45일 이상」, 「120일의 경우 60일 이상」, 「150일의 경우 75일 이상」, 「180일의 경우 90일 이상」, 「210일의 경우 105일 이상」, 「240일의 경우 120일 이상」, 「270일의 경우 135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에 유의
-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사전에
 -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한 후,
 -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내역으로 1회 이상 반드시 실업인정을 받았을 것(전산확인)
-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사업개시일 기준)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자영업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가 아닐 것
 - ※ 사업 영위 시 자영업활동계획서에 신고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상이 시 부지급)
 - ※ 자영업 영위 중 사업의 단절(휴업, 다른 사업장 취업 등)이 있거나 타인 대리로 영위한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됨
 - ※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실제로 사업 영위 사실을 증빙할 수 없으면 비해당

※ 위 지급조건 모두 충족 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2. 제출서류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미해당)
- 세금계산서, 매출 또는 매입전표 등 사업 영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서류
- 부동산(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직종별 제출 서류 >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의 경우: 위촉증명서, 영업수당에 따른 수당명세서 사본(12개월분)
- 자유소득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수당 입금 내역(12개월분) 등
-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카드사 월별 매출기록 등(12개월분)
- 개인용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2개월)

※ 사업영위 증빙서류는 연속적으로 12개월분이 제출되어야 함.

3. 청구방법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센터에 본인이 직접 청구]

방문(대리인 가능), 등기우편, 인터넷(www.ei.go.kr - 첨부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팩스 접수 가능

□ 주소: (우 22865)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스플러스빌딩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실업급여팀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문의: 032-540-2045 / 팩스: 0508-8230-0136)

4.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 잔여급여일수(사업개시일~수급기간만료일) × 1/2

5. 기타 유의사항

-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사업이 변경된 경우(폐업·휴업 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처리기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주말, 공휴일 제외 14일

